

양주 옥정신도시 린 파밀리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A-1BL
-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9층 24개동, 총 2,049세대
-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295세대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

주택형 (㎡)		74.4400A	74.8600B	74.8800C	84.9600A	84.8600B	합 계
국가유공자	추천자	17	27	4	33	18	99
	예비대상자	51	81	12	99	54	297
장애인	추천자	14	22	4	27	15	82
	예비대상자	42	66	12	81	45	246
북한이탈주민	추천자	3	5	-	6	3	17
	예비대상자	9	15	-	18	9	51
지자체출거민	추천자	10	16	2	19	11	58
	예비대상자	30	48	6	57	33	174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천자	1	2	1	2	1	7
	예비대상자	3	6	3	6	3	2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	1	1	-	2	1	5
	예비대상자	3	3	-	6	3	15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자	2	3	-	4	2	11
	예비대상자	6	9	-	12	6	33
우수기능인	추천자	1	1	-	1	1	4
	예비대상자	3	3	-	3	3	12
공무원	추천자	1	1	-	1	1	4
	예비대상자	3	3	-	3	3	12
의사상자	추천자	1	1	-	1	1	4
	예비대상자	3	3	-	3	3	12
다문화가족	추천자	-	1	-	1	-	2
	예비대상자	-	3	-	3	-	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추천자	-	1	-	1	-	2
	예비대상자	-	3	-	3	-	6

- 가.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나.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다.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라. 신청자가 본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공급 일정(안)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1.04.08.(목)		건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건본주택 개관	2021.04.09.(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 린 파밀리에 건본주택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1.04.19.(월)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건본주택 방문청약	2021.04.19.(월) 10:00~14:00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04.27.(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정당계약 기간	2021.05.31.(월) ~ 2021.06.06.(일) 10:00~16:00		당사 건본주택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포함 쉐 은행)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특별공급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14호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p> </div>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미건설㈜, 신동아건설㈜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거민 등 제외)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첨에 의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월거민 등 제외)

청약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4.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미건설(주),신동아건설(주)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추천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신청 주택형 청약접수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첨, 동·호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등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 및 입주·거주 의무 기간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6.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건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1번지
- 홈페이지 : <http://www.oj-lynnfamilie.com>
- 분양문의 : 031-858-7400



※ 참고자료

1)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학교, 공원 등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 건설되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